



제426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상급학교 진학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 등 >

■ 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54호)

■ 김영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61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 상급학교 진학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 등	4

I. 제안경위

【임이자의원안】

1. 발 의 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21.
3. 회부연월일 : 2025. 2. 24.

【김영배의원안】

1. 발 의 자 : 김영배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9.
3. 회부연월일 : 2025. 4.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이자의원안】

제안이유

현행 법령은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없고,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전학을 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같은 학군에 속하는 학교를 다니는 관계로 서로 만날 수 있고, 전학이 아닌 출석정지·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경우 계속해서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교육지원청을 달리하는 학교를 배정하고, 출석정지·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를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를 요청한 때에는 그 이유가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보복행위 등일 경우 상급학교의 배치에 있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학교를 분리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의제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 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와 관련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의 학교를 배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16항 신설).
- 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출석정지·학급교체 조치와 관련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17항 신설).

【김영배의원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학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및 학급교체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가해학생을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인 점에 감안한다면,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Ⅲ. 검토의견

□ 상급학교 진학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 등

개정안들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 있어, “전학(제8호)” 조치를 받은 경우와 “출석정지(제6호) 및 학급교체(제7호)” 조치를 받은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하도록 하되,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여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임의자의원안 제17조 제3항·제16항·제17항 신설 등, 김영배의원안 제17조의6 신설).

【임의자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② (생략) <u><신설></u>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하여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를 요청 할 때에는 그 이유가 피해학생에 대 한 협박, 괴롭힘,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 상급학교 의 배치에 있어 피해학생과 가해학 생의 학교를 분리하는 조치를 한 것 으로 본다.
③ ~ ⑥ (생략)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 지와 같음)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⑧ 제6항 및 제7항에-----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
로 정할 수 있다.

⑧·⑨ 생 략)

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
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
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
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⑪ ~ ⑭ (생 략)

<신 설>

<신 설>

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
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
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

-----.

⑨·⑩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
음)

⑪ -----제5항부터 제7항
까지에-----

-----.

⑫ ~ ⑮ (현행 제11항부터 제14항
까지와 같음)

⑯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제8
호에 따른 조치와 관련된 피해학생
과 가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
역의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
적으로 배정한다.

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제6
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조치와 관련
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상급학교
로 진학하는 경우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
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
한다.

⑱ -----

제8항에도-----

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⑩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⑪ (생략)	----- -----. ⑫ -----제10항, 제11항 및 제18항에----- ----- ----- ----- ----- ----- -----. ⑬ (현행 제17항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 분리 조치 및 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제16항 및 제1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교 분리 조치 및 배정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폭력부터 적용한다.
--	---

【김영배의원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17조의6(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 배정)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진학 조치가 이루어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u>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u> <u>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학급교체의 조치가 이루어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해당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 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 조치가 이루어진 가해학생에게도 적용한다.
--	--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은 제16조¹⁾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

치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를 정하고, 제17조2)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조치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규정을 두고 있음.

특히,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4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

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 ⑬ (생략)

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⑮ ~ ⑰ (생략)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한 조치로 “전학(제8호)”을 요청한 경우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되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학을 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에 속하는 학교에 배정을 받아 서로 만날 수 있고, 가해학생이 전학이 아닌 출석정지(제6호)·학급교체(제7호)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상급학교 분리배정 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 피해학생이 계속해서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들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전학(제8호)” 조치뿐 아니라 “출석정지(제6호) 및 학급교체(제7호)”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하도록 하되,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여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다만, 구체적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전학(제8호)인 경우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진학시, 임의자의원안은 서로 “다른 교육 지원청 관할 구역의 학교”로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김영배의원안은 “다른 학교”로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등의 차이가 있음.

【개정안의 내용 비교】

구분	임의자의원안	김영배의원안	비고
전학 제8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진학시 <u>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의 학교</u> 배정. 단, 피해학생 입학 학교 <u>우선 배정</u> (안 제17조제16항)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상급 학교 진학시 <u>다른 학교 배정</u> . 단, 피해학생 입학 학교 <u>우선 배정</u> (안 제17조의6제1항)	김영배의원안은 현행 시행령 제20조제4항과 동일
출석정지 제6호 또는 학급교체 제7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진학시 <u>다른 학교 배정</u> . 단, 피해 학생 입학 학교 <u>우선 배정</u> (안 제 17조제17항)	· <u>피해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u> 상급 학교 진학시 가해학생과 <u>다른 학교 배정</u> . 단, 피해학생 입학 학교 <u>우선 고려</u> (안 제17조의6제2항)	임의자의원안은 우선 배정(강행) 김영배의원안은 우선 고려(임의)
협박, 괴롭힘, 보복 등 사유	·제6호~제8호 조치 이유가 피해학생 협박, 괴롭힘,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 이용 포함)일 경우, <u>상급학교 배치 시 피·가해학생 분리 조치 의제</u> (안 제17조제3항)	-	
부칙 (상급학교 배정 적용례)	·제2조(학교 분리 조치 및 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제16항 및 제 1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교 분리 조치 및 배정에 관한 사항은 <u>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폭력부터 적용</u>	·제2조(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 배정에 관한 적용례) <u>제17조의6제1항</u> 의 개정규정은 <u>이 법 시행 전에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 조치가 이루어진 가해학생에게도 적용</u>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동일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전학 조치’ 외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서로 다른 상급학교 배정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서면사과·접촉금지·학급교체 등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되면 피해학생의 2차피해 우려가 있고, 피해학생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³⁾.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명시된 ‘배정’이 비평준화지역 학교와 같이 ‘선발’ 유형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데 따르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도 있음⁴⁾.

따라서, 개정안은 학교폭력에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⁵⁾와 학교폭력의 정도가 가해학생을 전학시킬 정도는 아닐지라도 피해학생의 입장에서는 2차피해 등의 우려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3)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상급학교 진학 시 분리배정 고려해야” -인권위,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표명-, 2016. 12. 14.자 참고, 15진정0777000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미흡

- 학교폭력 발생 후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있는 경우, 학생들 간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피해학생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폭력 정도가 가해학생을 전학시킬 정도는 아닐지라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 배정하는 것이 피해학생을 보호와 가해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
- 다만, 지역 내 학생들의 통학이 가능한 상급학교가 하나인 경우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학교폭력의 정도와 특성,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관계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이에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각 시·도 교육청에 상급학교 배정 시, 심사기구를 구성하여 피해학생의 신청을 통해 분리배정을 검토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교육부에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표명

4)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이 동일한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2023. 8. 11.자 참고, 23진정0024600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취지가 있다고 보임.

다만, 해당 학생들이 속한 관할 구역에 따라 통학 가능한 상급학교가 한정된 경우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함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및 가해학생의 학습권도 중요하므로 학교폭력의 정도와 특성,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관계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보임.

아울러, 임의자의원안 제17조제3항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그 이유가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 괴롭힘,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 상급학교의 배치에 있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학교를 분리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보는’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출석정지(제6호) 및 학급교체(제7호)” 조치를 받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학교 내 분리가 된 경우라도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 괴롭힘, 보복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라도 2차피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상급학교 진학시 분리 배정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17조제2항⁶⁾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망 이용 행위 포함)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출석정지(제6호) 및 학급교체(제7호)” 조치를 한 것은 피해학생 보호와 함께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려는 것이며,

개정안 제16항·제17항에서도 가해학생이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유와 상관없이 상급학교 진학시 피해학생과 분리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현재도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교육감(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⁷⁾ 등을 고려하여 학교를 배정하고 있고, 관할 구역 내 배정 가능한 학교가 없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함.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현황】

기간 ¹⁾	서면 사과 (제1호)	접촉, 협박, 보복 금지 (제2호)	학교 봉사 (제3호)	사회 봉사 (제4호)	특별교육, 심리치료 (제5호)	출석 정지 (제6호)	학급 교체 (제7호)	전학 (제8호)	퇴학 (제9호)
'20학년도	6,688	7,303	4,426	1,078	1,533	2,107	277	667	46
'21학년도	11,561	13,032	8,090	2,476	1,791	2,976	743	999	53
'22학년도	13,038	16,191	10,444	3,558	1,277	3,009	746	838	41
'23학년도	12,087	16,217	11,259	4,293	1,320	2,955	759	886	34

주1: 각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 기준

자료: 교육부(단, 1명의 가해 학생에게 2개 이상의 선도·교육 조치 병과 가능)

7) 시·도교육(지원)청별 전학 및 재취학(편입학) 업무 시행계획에 따라 통학거리를 5km 내외로 배정, 가해학생 주소지를 기준으로 현 소속 학교 통학구역 외의 인접한 학교로 배정함

또한, 교육부는 피·가해학생이 동일 학교에 진학한 경우 학교장이 학급분리, 상담지원 등 학교 내 피해학생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23학년도 심의위원회 가해학생 조치 현황(출석정지 2,955건, 학급교체 759건⁸⁾)을 감안할 때 출석정지·학급교체 조치에 상급 학교 분리까지 적용하는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개정안들에 대해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교육부 등 관계기관 의견】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 (신중검토)	(임이자 의원안) ○ 개정안과 같이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이 소속된 교육지원청과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로 배정할 경우 - 거주지를 벗어나 타 시·도 학교에 배정하여야 하여 학생 뿐만 아니라 부모·형제의 학업 및 생활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기본권(자유권, 사회권) 침해 우려가 있음 - 특히, 초·중등학생의 경우 가정에서의 통학이 불가능해져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김영배 의원안) ○ 전학,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관련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여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안 제1항은 동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을 법률로 상향한 것으로 이견 없음 ○ 다만, 안 제2항에 따라 학교 내 피·가해학생 보호 및 분리 조치인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를 근거로 상급학교 진학시 학교를 분리하도록 할 경우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중 및 이중 처벌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통학거리 증가, 교우관계 어려움 등의 문제로 가해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장 긴급조치로 부과가 가능한 출석정지 조치에 대해서도 상급학교 분리배정 할 경우, 민원 발생으로 학교장의 조치 결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신중검토 필요
시·도교육청 (신중검토)	(임이자 의원안) ○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의 학교를 배정할 경우 통학거리가 너무 멀어져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고, 등하교시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공통)

8) 2023년 초·중·고 학교수 12,186개교

관계기관	의견
	○ 도서지역의 경우 타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로 진학이 사실상 불가함(인천) ○ 학교장 전형 고등학교에 가해학생이 합격한 후 피해학생이 해당 지역 배정을 요구할 경우 가해학생을 강제로 합격 취소할 수 없음(충남) (김영배 의원안)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장 긴급조치로 부과되는 출석정지 조치부터 상급학교 분리 배정하는 것은 신중검토 필요(경기, 대전, 충남) ○ 상급학교 분리배정 필요 조치가 확대될 경우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가 많지 않은 지방 소도시의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타지역 학교 전학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경남, 전남), 비선호 학교에 가해학생이 많이 배정될 수 있어 비선호 학교의 교육과정운영과 생활지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됨(충남)

문 의 처
02)6788-5192